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·활용을 추가함(안 제23조제5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부칙에 이 법 시행 전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등의 경미한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